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5947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안○○
피고, 피항소인	○○군수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구합1606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8,041,49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00,6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501,560원(가산세 포함)의 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에는 사전통지 당시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의 '학술연구단체'가 아닌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종교단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건물 중 출판·사역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 중 적어도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예배실, 예배실, 기도실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다. 원고가 종교단체로서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하자 피고가 3년여 간의 취득세를 면제한 것은 원고를 종교단체로 보고 취득세 등을 면제하겠다는 묵시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기존의 견해표명이나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4. 판단

가. 처분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 당시 구체적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피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갑 제3호증)에 조사 사유를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제140조"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이 사건 처분의 발령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에,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고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조사대상 기간,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알리는 등 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위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조사 사유'란에 "정기 지방세 세무조사 지방세기본법 제82조 및 제140조"라고만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서 이 사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침익적 처분임에도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45조 제1항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갑 제4호증)를 송달받았던 점, ② 위 통지서에서는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③ 원고는 2021. 9. 2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에 이의를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2021. 12. 9.자 ○○도지사의 불채택 결정 이후인 2021. 12.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의견제출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나) 종교단체란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이념적 요소로서 교의, 행위적 요소로서 예식・행사, 인적・조직적 요소로서 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직자와 신도, 물적 요소로서 시설이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학술연구단체라 함은 학술의 연구와 발표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학술의 연구와 발표가 부대사업의 하나에 불과한 경우에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75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4. 가. 2) 구체적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쪽 17, 18행의 "갑 제5, 8, 11, 12, 15 내지 20호증, 을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8, 11, 12, 15 내지 2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6쪽 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에 대한 2005. 2. 3.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에는, 그 설립허가의 근거로 민법 제32조 및 구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2005. 6. 4. 문화관광부령 제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가 기재되어 있고,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8조 제2항 제3호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각종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허가 당시의 주무관청, 관리감독 기관 등의 관점에서 보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원고는 일응 '학술'이 아닌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으로 그 설립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1)]

자) 그러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여(각 호는 별지 참조) "종교단체"와 "향교"를 동일 선상에 두고 있는 한편, 각 호에서 종교단체가 그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라도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 형식과 내용에다가,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위 법리의 내용까지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비록 설립 당시에는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으로 그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설령 원고가 종교단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이 곧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차) 원고는 2005. 2. 3. 설립허가 및 개업 당시 업태는 '비영리', 종목은 '종교교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을 제1호증의 2, 3쪽). 그리고 원고 법인의 정관 제1장(총칙) 제4조(사업)는 원고가 '성경적 관점의 교역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교회의 전 사역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실제', '세미나 개최와 현장 임상실습', '저술, 자료개발 및 출

1) 원고는 ○○도지사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재발급 받은 이후인 2018년 하반기부터 ○○도가 공개하고 있는 '종교관련 비영리 법인현황'에 '개신교 계열 종교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중 하나로 등록되어 있다(갑 제1, 9호증 및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 '○○도청 2018년 하반기 종교관련 비영리 법인현황 사전정보공표'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판', '기독교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업', '본원 기본재산의 임대사업' 등을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원고 법인의 2017년, 2018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의 매출액은 신도들로부터의 헌금 수입 등이 아닌 상품매출액(2018년 10,845,406원)과 임대료수입(2017년 20,800,000원, 2018년 23,350,000원)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교육훈련비와 도서인쇄비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지출하였던 사실이 확인된다.

카) 원고 법인의 정관은 제2장(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에서 원고의 회원은 '기독교교육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인사, 기독교 전반의 전문가, 교계의 인사, 기독교교육 분야와 이와 관련된 그 외 분야의 출판 보급에 관여하는 인사, 기독교교육에 관여하는 인사로서 연구원의 취지에 찬동하는 이로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하 제3장에서는 임원, 제4장에서는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들만을 두고 있을 뿐, 종교단체의 중요한 인적 요소 중 하나인 신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 법인의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그 소개란에서 원고 소속 임원들과 연구전문위원들에 대한 정보만을 찾을 수 있는데, 위 임원들 및 연구전문위원들 중 상당수는 현재 다른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신학대학교의 교원 등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기적으로 원고가 개최하는 예배 등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신도들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세례교인이 15인 미만으로 현재 어느 D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취득 이후 정기적으로 예배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도 내지 2022년도의 예배 동영상을 제출하였는데(갑 제20호증), 위 각 동영상들을 보더라도 극히 소수의 인원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나, 신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다만 예배를 진행하는 원고 대표자의 모습만을 확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 사건 건물은 주거단지 등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도보로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2] 그 주변에는 일부 숙박시설과 음식점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일정한 규모의 신도들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예배 등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종교 관련 일부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종교 관련 학술연구단체로서 주된 연구활동과 병행하여 일부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교의의 선포, 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4. 나.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와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각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해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등 감면신청에 대하여 그 감면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원고를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 이 사건 건물(○○ ○○군 B)은, 북한강 변 G 가는 길(국도H호선)에 바로 인접하여 있고, 위 국도와는 별도로 이 사건 건물에 접근할 수 있는 인도나 도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지도 로드뷰 등 참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종교단체가 아닌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

판사 최○○

판사 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별지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0년
2.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제83조(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학술연구단체 등의 범위)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005. 3. 8. 대통령령 제18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문화관광부소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1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다음 각목의 법인을 제외한 각종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활동범위가 3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목적·명칭·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를 제외한다.

가. I협의회

나. J협의회

다. K종교단체

라. L중앙회

마. M종교단체

바. N유지재단

사. O유지재단

아. P연합회

자. Q협의회

차. R단체

카. S협의회

타. T종교단체

파. U유지재단

끝.